

통일독일의 교원통합과 이의 통일한국 북한교원 인적관리에 대한 시사점*

김현철**·이우영***

이 연구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원통합 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기존교원에 대한 해임과 재임용 기준, 그리고 재임용된 교원의 재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 독일의 교원통합 과정에서는 교원해임 기준, 재임용교원의 재교육제도, 재교육 필요교사들의 분류, 재교육 내용, 재교육 방법, 재교육 프로그램, 재교육 담당기관 등이 검토되었다. 북한의 이념교육과목 비중에 따른 통일 이후 해임 교원 수와 재임용 교원 수가 남북한 교사일인당 학생 수 차이를 고려한 통일한국의 신규임용 교원 수와 함께 예상되었다. 남북한 교사 간의 교과연구회 운영, 남북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교류 등의 사전적 시도 필요성과 예상하지 못한 시기의 통일로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더라도 통일된 국가 내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중단 없이 진행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주제어: 통일한국, 교원, 재임용, 재교육

* 이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통일한국의 초중등교원 수요예측과 공급방안”(북한대학원대학교, 2019)의 3장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통일한국의 초중등 교원의 수요규모와 교원의 공급방안, 재교육 방안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일부로서 이 일련의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의 통일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였다. 즉 이 연구는 통일 이후 교육부에서 발생할 교원수급의 가장 어려운 상황을 상정한 연구가 된다.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1저자.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1. 서론

1975년의 베트남, 1990년 5월의 예멘, 그리고 1990년 10월 독일의 통일과정은 완전히 상이하여 전쟁을 경험하면서 통일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었던 베트남의 경우도 있고, 양 분단체제 지도층의 협상이나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룬 예멘의 경우도 있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일시에 급진적으로 흡수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도 있었다. 남북한은 오래 전부터 연방제나 국가연합 등의 통일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북한 통일의 시기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특별히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학교교육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교육부문은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인 분야가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문의 통일 이후 교육통합 관련 연구는 주로 남북한의 과목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과목별로 통일 이후 사용될 통합 교육과정을 도출하는 연구들이었다.¹⁾ 교육행정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학제, 학교조직 등의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 관련 연구들이었으며,²⁾ 그중에서 교원양성 관련 연구들도 일부 수행되었다. 김병찬(2008)³⁾은 남북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비교하였으며, 김동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행된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연구는 40여 편, 교과서 비교연구는 50여 편이며, 교육과정 비교연구와 교과서 비교연구 모두 수학교과 연구가 가장 많다.

2) 남북한 교육행정 연구 40여 편은 대부분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연구들이었고 이들 중 교원양성 관련 학술지 게재 연구는 7편이다.

3) 김병찬, “남한과 북한의 교사 양성 과정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별(1997)⁴⁾, 신철준(1999)⁵⁾, 송두록(2008)⁶⁾은 남북한의 교원양성 제도를 비교하였다. 김영주(2002)⁷⁾는 남북한의 교원양성 기관을 비교하였고, 윤종혁·김정래·김창환·한만길(2002)⁸⁾와 한만길·강구섭·권성아·박재윤·양승실·조정아(2012)⁹⁾는 북한 교원제도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통일한국에서 기존 북한교원을 재임용, 또는 해임하기 위한 기준이나 재임용된 북한교원을 재교육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원통합 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통일한국의 북한교원 인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통일과정에서 교원의 해임과 재교육을 실시한 독일의 동독지역 기존교원에 대한 해임기준과 재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일 초기 남북한의 교원수요 규모와 함께 검토하여 통일한국의 북한교

1호(2008), 143-179쪽.

- 4) 김동별,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5) 신철준, “북한의 중등교원 양성제도 연구”(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6) 송두록,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김형직 사범대학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7) 김영주,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비교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8) 윤종혁·김정래·김창환·한만길,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2002).
- 9) 한만길·강구섭·권성아·박재윤·양승실·조정아,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2).

원 인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통일독일의 동독교원 재교육 과정에서는 다음이 검토된다.

- 재교육 제도
- 재교육 필요 교원들의 분류
- 재교육 내용
- 재교육 방법
- 재교육 프로그램
- 재교육 담당기관

3. 통일한국의 북한교원 재임용과 재교육

1) 통일경험 국가의 교원재임용

(1) 베트남

2차 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예멘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통일을 이룩하였다. 1975년 베트남은 전쟁을 거쳐 통일되었고, 남북예멘은 1990년 5월 남북 예멘 정치지도자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독일은 1990년 10월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방식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하였다.¹⁰⁾

통일 이후 사회주의 베트남정부는 남부 베트남지역에서 과거 교육체제의 영향력 제거와 12세부터 50세 주민 문맹률 축소의 두 가지

10) 박종철,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제16호(1993), 81쪽.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2,000만 부의 교과서를 인쇄하여 남부 베트남에 배포하였다. 학생 수는 통일 이후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해마다 20만 명 이상씩 증가하여 1981년에는 전 인구의 약 1/4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였다.¹¹⁾

사이공정부에 근무하였던 군인,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보다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에 반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재교육마저 면제되거나,¹²⁾ 사상적, 문화적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 과정’을 이수하고¹³⁾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였다. 단지 남베트남의 교사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다수의 교사들이 북베트남으로부터 남베트남으로 파견되었다.¹⁴⁾

(2) 예멘

남북예멘은 1972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후에 1990년 합의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남북 예멘과 동서독의 통일은 모두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지만 독일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의 편입(beitritt) 규정에 의거하여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던 반면에 예멘은 남북이 통일헌법에 합의함으로써 통일되었다.¹⁵⁾

11) London, Jonathan, *Education in Vietnam-Historical roots, recent trends*(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1), pp.15~16

12) 박종철,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83쪽.

13) London, Jonathan, *Education in Vietnam - Historical roots, recent trends*(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1), p.15.

14) 베트남교육, <http://factsanddetails.com/southeast-asia/Vietnam/sub5-9f/entry-3457.html>.

통일이전에 남예멘은 사회주의 일당체제, 북예멘은 봉건적인 족장 체제를 기초로 하는 이슬람 군사과두체제였다.¹⁶⁾ 통일에 합의한 직후에 교육문제를 다룬 양자 간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¹⁷⁾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교육과정 수립 문제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었는데 결과는 북예멘의 관점이 주로 반영되었다. 교육과정 수립이 주요 쟁점이 된 이유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젊은 세대 가치관 형성의 이념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¹⁸⁾

통일예멘은 교육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걸프지역 아랍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 축소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특별히 교육부문에서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북예멘지역은 대규모 인력부족 사태에 직면하였고, 교사양성체제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해외 인력지원의 축소로 열악한 교육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¹⁹⁾ 이에 따라 기존 교원인력을 해임하거나 재교육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웠다.

15) 박영철, “분단국가의 통일과 북한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논문집』, 제4호(1999), 70쪽.

16) Amr Hamzawy, *Between Government and opposition: The case of the Yemeni congregation for reform*(Washington DC·Moscow·Beijing·Beirut·Brussel: Carnegie Endowment, 2009), p.1.

17) Abdulaziz Ahmed Baeisa, “Yemen unity,” 『통일문제연구』, 제16호(2000), 67쪽.

18) Sharif Ismail, *Unification in Yemen: Dynamics of political integration, 1978~200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iversity of Oxford: 2009), p.56.

19) *Ibid*, p.64.

(3) 독일

2차 대전 후 분단되었다가 다시 통일을 이룬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국가 중에서 베트남과 예멘에서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교원의 대규모 해임이나 재교육 신규충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독일에서만 해임, 재교육 상황이 발생하였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여 정치적으로 구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년간의 수습기간이 끝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동독체제하에서 학생들에게 당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새로운 체제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된 독일에서는 교사의 전문능력, 교사로서의 적성, 슈타지(국가안전부)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서 동독교사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²⁰⁾

동독의 교사는 통일 이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교사용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제출해야만 했다. 이 설문지의 질문들은 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진술과 동독에서의 비밀경찰 슈타지 활동 여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응답에 따라 교사직에서의 해임과 재임용이 결정되었는데, 설문지에는 사실진술에 대한 본인 서명이 있어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사직 해임의 근거가 되었다. 교사자질에 대한 일반적 검토는 일명 “가우크 청(Gauk-Behoerde)”²¹⁾

20)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부 엮음, 『교육통합분야』, 서울: 통일부(2016), 54~55쪽.

21) 통일 후 구동독 국가안전부 비밀문건 처리를 담당한 기관으로,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초대 청장인 Gauk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작업은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²²⁾

당시 동독에는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아비투어에 대한 할당량이 있었다. 그런데 아비투어 할당을 지배계층이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노동자계층은 쿼터를 확보하기가 힘들었다. 70~80년대 슈타지가 비대해지면서부터는 슈타지가 학교에 정보원을 두고 학생들의 진학여부를 판단하는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당시 동독은 국가주도로 운동선수를 양성했는데 슈타지는 운동선수의 선발과 선발된 선수들에 대한 여행허가 등의 특혜제공 여부도 결정하였다.²³⁾ 분단 이후 동독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으며 반체제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았다. 교사들은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학생선발로 슈타지와 갈등하거나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학교에는 교사인 정보원이 많이 있었다.²⁴⁾

동독에서는 14세부터 25세 동독청년의 75%가 가입한 노동당 청년조직인 자유독일청년연맹(Freien Deutschen Jugend: FDJ; Free German Youth) 지도교사 등의 무자격교사,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교섭단체의 최고위원회 회원, 각 지부 지도위원,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 Stasi) 협력교사, 동독 어린이단체인 파이어니어 그룹의 지도교사 등 정치이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해임되었다.²⁵⁾ 또 통일시점에 각 학교에

22) 아이케 카야크, “독일 통일 전후 동독 지역의 교육제도 변화: 교사와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2002한국교육개발원 학술세미나, 2002년 1월 28일), 11~12쪽.

23) 김신동·김영윤·조명숙·채해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탈북학교 교사들의 독일교육기행』(서울: 콘라트아데나워재단, 2014), 68쪽.

24) 김신동·김영윤·조명숙·채해성, 위의 책, 69쪽.

재직 중이었던 교장 및 부교장은 ‘전부’²⁶⁾ 해임되었다.²⁷⁾

동독은 서독에 비하여 과다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념성 문제 외에도 초과 공급된 교사의 해임은 필연적이었다. 통일 이후 동독의 학급당 학생 수가 서독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초과공급 교사는 더욱 많아졌다.²⁸⁾ 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서 학교 교사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신영방주들은 비용문제 때문에도 교직감축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⁹⁾ 동독지역 학교에 전반적으로는 교사가 초과공급 상태였으나, 외국어나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목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여 이들 과목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재임용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한 과목의 경우에는 초과공급만의 이유로 정치적 이념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사들이 해임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해임은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사해임의 방식은 신영방주별 주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몇몇

25)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55쪽;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127쪽.

26) 신세호·박성조·양성철·김영철·박재윤·백성준, 『독일 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256쪽.

27)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53-57쪽은 ‘각 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교장 및 교감 6,700명이 대부분’ 해임되었다고 기술했다.

28) Klaus Gotz, “Administrative reconstruction in the New Lander: The Federal dimension,” *Paper presented to the workshop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e new German Land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pp.8-9, December(1995)는 서독기준에 따른 동독지역의 교사 초과공급 규모는 약 25,000명이었다고 보고하였다Upchurch, Martin, “Institutional transference and changing workplace relations in post unification East Germany: A case study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Work, Employment & Society*, Vol.12, No.2(1998), p.204에서 재인용.

29)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53-54쪽.

연방주는 계약해지나 조기퇴직금수령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교직 감축을 시도했다.³⁰⁾ 서독에서 영입된 정치인³¹⁾이 주정부의 총리직을 맡은 Sachsen주의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비교적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Sachsen주 고등교육청에서는 1991년 9월 말까지 약 3,000명의 교사를 ‘슈타지 교사’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으며 1991년 12월 31일까지 과거경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모두 해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만 2,000명의 교사 중 7,0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해임되었다. Brandenburg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략 20%의 교사들이 해임되었는데, Brandenburg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20%의 수업시간 및 월급 축소에 동의하여 초과공급된 교원들은 전혀 해고하지 않았다.³²⁾

해임 통보를 받은 교사는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고, 고등교육청의 청문위원회에서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해임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거의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다. 교사노동조합(Gewerkschaft Erziehung Wissenschaft: GEW)은 장학사 또는 인사과정의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가 ‘해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Sachsen주의 교육부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과거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육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지위를 통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제도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³³⁾ 장기간 실시된 전체 교원

30) 아이케 카야크, “독일 통일 전후 동독 지역의 교육제도 변화,” 12쪽.

31) 기민당의 Kurt Biedenkopf.

32) 아이케 카야크, “독일 통일 전후 동독 지역의 교육제도 변화,” 12쪽.

33) ‘망각의 시간(Zeit des Vergessens)’, Sachsen 주 교사 대량해고에 대한 시사주간

에 대한 검증작업과 이에 따른 해임으로 동독 교사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였다.³⁴⁾ 동독 교사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불안과, 과거 동독시절 교사로서의 헌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³⁵⁾

해임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은 한 번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해임을 통보하였다. 슈타지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연결된 낮은 직급 인력의 경우(청소부 같은 경우는 계속 일하게 되었으나 높은 직급은 대부분 해임되었다.³⁶⁾

해임된 교사의 규모에 대해서 Rust & Rust(1995)³⁷⁾는 1992/93학년도 말까지 동독지역 교사 189,770명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인력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교직을 떠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용길(2010)³⁸⁾은 Sachsen주에서는 약 6만 명의 교사 가운데 약 2만, Brandenburg주에서는 약 3만 5,000명의 교사 가운데 약 6,500명, 강구섭(2012)³⁹⁾은 전체

지 Spiegel의 1991년 9월 30일 자 기사. 통일부,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 243쪽; 통일부, 『교육통합분야 관련 정책문서』, 182쪽.

34) "Zeit des Vergessens," *Spiegel: Zeit des Vergessens*, Vol.40(1991), pp.110~114.

35) Upchurch, Martin, "Institutional transference and changing workplace relations in post unification East Germany: A case study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Work, Employment & Society*, Vol.12, No.2(1998), p.206.

36) 김신동·김영운·조명숙·채혜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탈북학교 교사들의 독일교육기행』, 70쪽.

37) Val Dean Rust and Diane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210.

38)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388쪽.

39)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2권 1호(2012), 53쪽.

교사의 20% 이상인 36,677명이 해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영탁(1997)⁴⁰⁾에 의하면 기존의 교사를 심사한 해임 기준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달라서 Mecklenburg-Vorpommern주와 Sachsen-Anhalt주는 교사의 정치적인 전력보다 전문성에 더 큰 비중을 둔 반면, Sachsen주에서는 정치적 측면을 우선시하였다. Brandenburg주와 Thuringia주는 초과공급 교사들에 대해서 우선, 시간제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필요 없는 교사는 스스로 교직을 떠나도록 유도하였다.

신연방주의 각종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1989년 185,000명에서 1992년에는 155,000명으로 감소하였다. 김창환(2016)⁴¹⁾은 해고 교사들의 가장 많은 해고사유는 ‘전문능력 부족’이었고, ‘국가보위부(슈타지) 연루’로 인한 해고는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2) 통일독일의 교원 재교육

독일의 통일 후 교원통합은 서독식의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시스템이 동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일 이후 교육과정이 개편된 뒤에 Mecklenburg-West Pomerania주에서만 3,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동독지역에 교사재교육 계획(Nachqualifizierungs massnahme, retraining scheme)이 수립되었다.⁴²⁾ 기존 교사는 각 주별로

40)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서울: 한울, 1997), 382쪽.

41)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53-54쪽.

42) Karen Galtress-Horl, “Retraining language teachers,” David Phillips(ed.) *Education in Germany since unification*(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83.

심사를 거쳐 재임용을 결정하고, 재임용된 교사들은 재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정치·사회 교과 교사들은 자유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관한 재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교직에 잔류가 가능하였다.⁴³⁾

동독지역의 교사들은 서독지역에 비해 자질이 현저히 낮아서 교사교육법을 제정하여 해임되지 않은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⁴⁴⁾ 특히 서독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동독교사 자격증 소유자는 재교육 과정을 밟아야 서독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⁴⁵⁾ 해임되지 않고 학교에 남게 된 교사들은 재교육을 조건으로 3년간 수습교사로 임용되었다. 수습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업관찰, 교과지식 및 교수법에 대한 면접 등에 의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서 다시 정식 교사로 임용되었다.⁴⁶⁾

(1) 재교육 제도

동독의 교원재교육 제도는 통일 전부터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89년 가을에 이미 교사의 정치교육 연수지침이 폐지되었고 교원의 연수는 교사재량에 맡겨졌다. 교원연수에 관한 개혁안은 주로 교사의 연수참여 분야의 선택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⁴⁷⁾

43)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서울: 한울, 1997), 53-57쪽.

44)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보다』, 388쪽.

45)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289쪽.

46)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128쪽.

47)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53-54쪽.

교원연수를 담당하던 교육기관들은 1990년 말까지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주 정치교육센터 등의 민간기관들이 교원연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 9월 18일 ‘교사양성을 위한 과도기 규정(Ubergangs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für Lehramter)’에 의해서 동독에 도입된 서독의 교원양성 제도는 18개월에서 24개월의 교원연수를 규정하고 있었다.

1990년 10월 15일 주 교육문화장관회의에서 체결된 <교사자격시험과 교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통일 이후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동독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은 1990년 이후에 재임용과정을 거친 후에 임시 수습교원 자격으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자격인정을 위해 수습기간 동안에 보충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그 자격인정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중반까지 동서독 교사들의 대우를 최대한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자격 관련 시험과 수업실습의 인정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서독에서는 대학의 교원양성과정 졸업 이후에 1차 국가고시의 합격과 수습근무, 그리고 2차 국가고시 합격 이후 정식 교원자격을 인정받았다. 동독의 교사들은 1993년의 주 교육문화장관회의의 <기존 경력을 위한 구동독 교사양성과정의 인정 및 배정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동독에서의 교사활동 증명으로 수습근무 및 2차 국가고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재임용된 동독의 교사들은 대학이나 교사교육기관 중에서 최소 40시간의 재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다. 특별히, 외국어 교과, 역사교과, 사회·정치교과, 종교·윤리교과 교원들은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48)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52-54쪽;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97-98쪽.

했다.⁴⁹⁾ 주 교육성부설 교사 연수기관은 교사들이 관심분야의 연수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들은 오후나 저녁시간에 개설되었는데, 교사들은 교육비를 분할하여 지불할 수도 있었으며, TV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다.⁵⁰⁾

(2) 재교육 필요 교원들의 분류

재교육이 필요한 교원들은 통일 이후 없어진 교과목 담당교원과 담당교과목의 수요가 감소한 교원의 두 부류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Staatsbürgerkunde’(civics)와 같이 동독 교육과정에만 있다가 통일 후 없어진 과목들의 담당교원이었고, 두 번째 집단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목의 수요가 감소한 교원들이었다.⁵¹⁾ 독일에서 교사들은 보통 2과목 이상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직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각자 판단되는 제2과목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했다.⁵²⁾

(3) 재교육 내용

교사재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 구동독 교원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의식 제거
- 서독보다 현저하게 낮은 동독지역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
- 교원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 적용

49)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128쪽.

50)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389쪽.

51) Karen Galtress-Horl, “Retraining language teachers,” p.83.

52) 김신동·김영운·조명숙·채해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109쪽.

- 교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역사, 철학, 사회, 정치 등 정치관련 교과 이수

교육이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이용된 결과로 동독지역의 교사 자격 획득 희망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라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학생들을 세뇌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가 요구되었다. 교사임용 이후에는 체제유지를 위해 공산당과 국가보안 체제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해 왔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이들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의식을 제거하는 재교육이 가장 먼저 요구되었다. 특히 정치·사회 및 역사과목 교사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법, 시장경제 등에 관한 교과 재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교직에 계속 남을 수 있었다.⁵³⁾ 이념 관련 과목만 담당했던 교사들도 재교육 후에 이념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은 가르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다.⁵⁴⁾

동독지역 교사들의 교수능력이 서독보다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교육학 일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과거의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교육도 요구되었다.

동독 교사들은 전문지식 외에 피교육자인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자 동등한 토론 상대이며,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을 말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⁵⁵⁾

동독에서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수방법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독 출신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가의 여러 교육방법에 어려움을 겪었다.⁵⁶⁾ 과거 동독시절과 달리 통일 이후

53)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99쪽.

54) 김신동·김영윤·조명숙·채해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109~110쪽.

55)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 100~102쪽.

에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 분야에서도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실습, 실험, 참여, 체험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동독교사들은 이를 위한 재교육이 요구되었다.⁵⁷⁾ 즉, 동독교사들에게는 수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구성하며 전달할 것인가의 교수방법론 관련 재교육이 필요했다.⁵⁸⁾

동독의 모든 시민을 포함한 교원들은 통일 이후의 삶에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independent thinking*), 자기 확신(*self-confidence*), 자유의지의 발현(*adequate handling of freedom*), 그리고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책임감(*responsibility for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community*)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책임은 아니었으며 이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산물이었다.⁵⁹⁾

교사들의 의식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도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치혼란을 줄여 주기 위한 역사, 철학, 사회, 정치 등 정치관련 교과에 대한 재교육과목 이수가 장려되었다.⁶⁰⁾ 통일 후 교사 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서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였고 훌륭한 내용의 강의들이 제공되었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 혹은 한 달 등의 짧은 재교육 기간으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⁶¹⁾

56) 김신동·김영윤·조명숙·채혜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123쪽.

57) 김신동·김영윤·조명숙·채혜성, 위의 책, 109~110쪽.

58)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 101쪽.

59) Klaus Schroeder, *Germany 20 years after reunification - Why the two parts that belong together won't grow together*(Brasilien, 2010), p.5.

60)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129쪽.

61)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 102쪽.

(4) 재교육 방법

통일 후 동독 출신 교사의 재교육은 서독 자매결연 주의 도움을 받아 각 신연방주의 교육연구기관이 주도하였고, 교사들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교육을 받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과를 마친 후에 강좌별로 지정 장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기간은 강좌마다 달라서 하루의 교육만으로 종료되는 강좌도 있었고, 일주일, 한 달 혹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기도 하였다. 통일 첫해에 실시된 재교육은 보통 대학의 2개 학기에 해당하는 35주 동안 매주 세 시간짜리 강좌로 진행되었다. 강좌는 45분씩 8회의 학습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들 중 4회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아니라 과제에 부과되는 시간이었다. 이는 첫해의 강좌들이 105시간의 교실수업과 추가적인 개별과제 시간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⁶²⁾

원칙적으로 재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재교육 과정을 거쳤다. 당시의 재교육 참여가 ‘자율적’인 형식을 가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교사를 의무적으로 재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⁶³⁾이었다. 서독지역에서 실시되던 기존의 교사재교육이 교사의 자기발전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교사재교육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되고 정착되어 갔다.

구동독지역 다섯 개 신연방주 모두 서독지역 자매결연 주의 강좌와

62) Karen Galtress-Horl, “Retraining language teachers,” p.85.

63)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 101쪽.

강사가 도입되었다. 동독의 Brandenburg주에서는 교사재교육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Potsdam, Frankfurt/Oder, Cottbus 등 세 개 도시에 지역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추가로 Ludwigsfelde에 입주 교육센터를 개설하였다. Brandenburg주 교육센터(Pedagogical State Institute of Brandenburg)나 더 일반적으로 PLIB(Padagogisches Landesinstitut Brandenburg)라고 불렀던 Ludwigsfelde 센터는 주 내 모든 교사들의 재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서독의 North-Rhine-Westphalia주가 센터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였으며, 센터는 개소 첫 학기에 약 600개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하루에 종료되지 않는 강좌의 수강자는 센터에서 숙박할 수 있었으며, 숙박비, 식비, 교재비 그리고 여비는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였다.

센터의 교사재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여러 불만에 직면하였는데 서독의 동독교사 재교육 강사들은 동독교사들이 자신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 집중해서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으며, 반면에 동독의 교사들은 서독 강사들에게 반감을 표현하였다. 신문에 서독 강사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학생처럼 다루고, 강사의 실력이 출중하지도 않다는 동독 교사의 불만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⁶⁴⁾ 서독 강사와 동독 교사 간에 공동체적 동료의식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⁶⁵⁾

64) Val Dean Rust and Diane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p.214.

65) *Ibid*, pp.212~214.

(5) 재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동독의 학교들은 서독보다 독일어 과목의 시수가 더 많았으며 서독은 동독보다 물리와 체육 과목의 시수가 더 많았다.⁶⁶⁾ 동독지역 교사의 재교육 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은 사회와 영어였는데, 이는 서독사회제도가 동독지역에 도입·적용됨에 따라 이를 교육시킬 사회과목 교사가 부족했고, 과거 동독의 외국어교육이 러시아어에 치중되고 영어교육은 비중이 작아서 통일 이후 영어과목 담당교사의 충원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⁶⁷⁾ 러시아어 담당교사들은 통일 이후 동독에서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어 외에 다른 언어의 교수능력이 요구되었다.⁶⁸⁾ Mecklenburg-West Pomeranian주의 교사재교육 프로그램(Nachqualifizierung: NQ)에 참가한 교사들의 80%는 영어교사가 되고자 하는 러시아어교사들이었으며, 재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의 50% 이상은 재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⁶⁹⁾

재교육 참여교사들은 첫째로 개인의 입장에서 그들은 교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2 또는 제3 과목의 교사자격증이 필요했으며 추가

66) Wolfgan Mitter, *Allgemeinbildendes Schulwesen: Grund-fragen und Uberblick.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90), p.191; Val Dean Rust and Diane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pp.74-75에서 재인용.

67) 김형윤·서인갑·황병식,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312쪽.

68) Martin Upchurch, "Institutional transference and changing workplace relations in post unification East Germany: A case study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Work, Employment & Society*, Vol.12, No.2(1998), p.203.

69) Karen Galtress-Horl, "Retraining language teachers," p.83.

자격증이 없이는 해임되거나 전일제 교사에게 요구되는 강의시수보다 작은 시간만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둘째로 정치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일부 과목 교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주정부의 입장에서 이미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3,000명 이상을 추가로 실직시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다. Mecklenburg-West Pomerania주에서는 총 3,239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⁷⁰⁾

Sachsen-Anhalt 주의 경우에는 Rostock대학, Greifswald대학, 그리고 교사 재교육 담당기관인 LISA(Landersinstitut für SchLqualität und Lehrerbildung Sachsen-Anhalt)에서 동독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공하였는데 <표 1>에는 당시 LISA가 제공하였던 재교육 과목과 과목별 재교육 참여 교원 수가 제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외국어 과목의 재교육 수요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과목의 재교육 참여 교원 수가 많았다.

통일 직후 LISA는 타기관과 연합하여 492명, 독자적으로 322명의 영어과목 담당교원을 재교육하였는데 Gustrow Institute for Teacher Training 등과 같은 LISA의 지역교육센터에서는 3년 동안 1,000시간 학습하며 50%는 교실수업, 50%는 가정학습의 11학년에서 16학년의 중등학교 영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⁷¹⁾ LISA에서는 교사들이 일과 후에 저녁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⁷²⁾

통일 초기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들은 동독지역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나 점차 광역화되면서 베를린주의 경우에 1991년

70) *Ibid*, p.83.

71) *Ibid*, p.84.

72) 김신동·김영윤·조명숙·채해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109~110쪽.

<표 1> 과목별 재교육참여 교원 수

과목	재교육참여 교원 수
외국어(Modern languages)	742
사회(Social studies)	650
초등교육(Primary school)	406
특수교육(Special needs)	340
IT(Information technology)	250
철학(Philosophy)	235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201
직업교육(Careers)	127
미술(Art)	111
지리(Geography)	100
음악(Music)	47
역사(History)	30
총	3,239

자료: Karen Galtress-Horl, "Retraining language teachers," p.84.

겨울에 베를린 주 교육부가 개설한 540개의 재교육 과정 중에서 동 베를린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28개뿐이었다. 28개 과정들은 대부분 동독 교사들에게 서베를린과 서독의 학교조직과 교육 전통, 명령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는 불가피하게 서독출신들이었으며, 교육장소도 주로 서베를린이었다. 1992년에는 가을까지 개설된 재교육 과정이 750개로 늘어났다.⁷³⁾

(6) 재교육 담당기관

서독에서는 교사양성과 재교육(Lehreraus und Fortbildung, Weiterbildung)을 위한 주립 교육기관(Landesinstitute)이 운영되어 왔다. 동독

73) Val Dean Rust and Diane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pp.212~214.

<표 2> 신연방주의 교육연구기관

주	교육연구기관
Berlin-Brandenburg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Berlin-Brandenburg(LISUM)
Bremen	Landesinstitut für Schule(LIS)
Hamburg	Landesinstitut für Lehrerbildung und Schulentwicklung
Mecklenburg-Vorpommern	Institut für Qualitätsentwicklun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Landesamt für Schule und Bildung(LaSuB)
Sachsen-Anhalt	Landesinstitut für Schulqualität und Lehrerbildung Sachsen-Anhalt(LISA)
Thüringer	Thüringer Institut für Lehrerfortbildung, Lehrplanentwicklung und Medien(Thillm)

지역에서의 주정부 지정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의 필요로 통일 직후부터 재교육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으나 대체로 1991년 하반기부터에는 이들 기관이 동독지역에서 동독교사들의 재교육을 담당했다. 교육연구기관들은 주마다 그 명칭이 다르고, 기관의 운영방식도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기관 내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기도 했으나 통일 이후 교사 재교육은 주로 이들 기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⁷⁴⁾ <표 2>에는 구동독지역 신연방주별 교사재교육 담당 교육기관명이 제시되었다.⁷⁵⁾

74)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 98~99쪽.

75) 재교육기관, <http://www.kmk.org/service/servicebereich-schule/landesinstitute.html>.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이룬 독일, 베트남, 예멘의 교육통합사례가 검토되고, 세 나라 중 교원 해임이 발생한 통일 독일의 교원 해임 기준, 재임용교원 재교육제도, 재교육 필요교사들의 분류, 재교육 내용, 재교육 방법, 재교육 프로그램, 재교육 담당기관 등이 검토되었다.

통일당시 독일에서는 동독지역 근무 기존교사들에 대한 해임과 재임용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20% 가량이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게 되었으며, 재임용된 교사들은 재교육을 받았다. 우선, 동독교사의 재임용은 1990년 10월 통일되기 훨씬 전인 1972년부터 시작된 동서독 간 여러 조약과 합의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동독지역 근무 교사들의 자격과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협약들로는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 1978년의 ‘독일문체 교육지침’, 1990년 8월 ‘통일조약’ 등이 있었으며, 1990년 1월부터는 동서독의 교육체제 통합을 위한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를 진행하였다.

통일당시 교사의 해임은 교사의 전문능력, 교사로서의 적성, 슈타지(국가안전부)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재임용된 동독지역의 교사들은 재교육을 조건으로 3년간 수습교사로 임용되었다. 재교육 대상 교원들은 통일 이후 없어진 교과목 담당교원과 담당 과목의 수요가 감소한 교원의 두 부류로 구분되었으며, 재교육의 내용은 구동독 교원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의식 제거, 서독보다 현저하게 낮은 동독지역 교원의 교수능력 향상, 교원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 적용, 교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역사, 철학, 사회, 정치 등 정치 관련 교과

이수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통일 첫해에 실시된 재교육은 보통 대학의 2개 학기에 해당하는 35주 동안 매주 세 시간짜리 강좌로 진행되었다. 각 주별로 서독 자매주의 강좌와 강사가 도입되었으며, 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과목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과목과 사회 과목이었다. 1991년부터는 동독에도 서독과 같이 각 주별로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기관이 주별로 설립되어 교사 재교육을 담당하였다.

Rust & Rust(1995)⁷⁶⁾는 1992/93학년도 말까지 동독지역 교사 189,770명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39,520명이 교직을 떠났다고 보고하였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지역에 근무하던 교원들 중에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동독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남북통일 시에도 독일통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사상 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재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통일 시에도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치적인 이유나 전문성 부족, 과목의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남북한 간 교사 일인당 학생 수 차이에 의한 신규교원 수요 외에 초과적인 수요가 통일 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해임과 재교육의 비중에 따라 신규교원 수요나 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직률을 10%라고만 상정하여도 학교급별 이직 교원 수는 초등과 중등이 각각 7,000명과 10,000명 이상이 될 것이며, 통일 첫해의 신규 교원수요는 김현철(2019)⁷⁷⁾에서 예측된 초등과 중등 각각의 연간 소요 신규임용 교원 수 4,000명, 4,500명과 이를 합하면 무려 초등과 중등 각각 11,000명과 14,500명에 이르게 된다. 독일의

76) Val Dean Rust and Diane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pp.212~214.

77) 김현철, “통일한국의 초중등교원 수요예측과 공급방안”(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9), 52~53쪽.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해임은 면담과 기록검토, 사직권고와 해직통보, 고등교육청 청문회 이의신청, 법원판결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해임에 따른 교원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임에 의한 수요가 통일시점에 집중되지는 않겠지만, 해임과 이직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요는 신규 소요 교원 수에 합산된 총수요의 산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60년대부터 소위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70년대 이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상대적으로 격하되고 주체사상이 유일한 사상체제로 등장하였다. 북한의 초중등학교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지원하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중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등의 교과목들이 모든 학년에서 25시간의 주당 수업시수 중에서 4시간(16.0%)을 차지하고 있고, 6년제 중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사회주의 도덕’, ‘현행 당정책’ 등의 교과목이 학년에 따라 주당 28시간에서 37시간의 전체 수업시수 중에서 3시간에서 6시간을 차지하고 있다.⁷⁸⁾ 또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김정은 관련 과목을 소학교와 중학교에 새롭게 개설하여 매 학년 주당 1시간씩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⁷⁹⁾

78) 통일교육원, 『북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06)의 196~197쪽 자료로부터 산출.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학제개혁과 후속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내용이나 개정 이후에도 정치체제 지원 과목의 내용과 비중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에서는 재교육이 교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로 구분되는데, 자격연수는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자격연수는 10일 이상, 60시간 이상 교육의 이론 및 방법에 관한 교육받도록 되어 있다. 1998년부터는 교원연수 이수학점제가 적용되어 연수효과를 높이고 승진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재교육은 교육연수원에서 실시되며, 특수 분야의 연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수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일 년에 두 번 10일 또는 16일 동안 재교육을 받고,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대학이나 평양 또는 각 도의 재교육기간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의 연수를 받는다. 재교육은 연수대상에 따라 유치원 교양원, 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부문 연수와 전문학교 교원, 대학교 교원, 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구분된다. 전국적·통일적 연수 외에 학교현장의 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단위 재교육과 학교단위 재교육도 실시된다. 북한에서는 사범대학 졸업생들만 자격교원 증서를 받으며, 자격교원 증서 없이 근무하는 교사들은 재교육과정을 통해 자격교원 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연간 1회의 의무적인 국가교원 승급심사제도가 있는데 재교육은 승급시험의 준비과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재교육 대상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학교 교원은 일부 대학과 전문학교에 설치한 재교육강좌와 교원강습소에서 재교육을 담당하고, 대학교원은 평양소재 김형직사범대학의 재교육학부, 교육행정가들은 평양의 중앙교육정치간부학교와 그 산하에 있는

79) 김정원, “김정은 체제 북한 교육제도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임,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서울: 늘봄플러스, 2016), 229쪽.

각 도의 교육정치간부학교에서 담당한다.⁸⁰⁾

그런데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과가 아닌 수학, 과학, 음악 등 모든 교과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숭배의식이 반영되어 있고 교과 외 학습활동으로 모든 교원이 사상학습과 총화 등의 활동으로 사상교육을 담당하므로 특정교과만 재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⁸¹⁾ 따라서 남북통일 시에는 독일통일 당시보다 더 많은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재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구섭⁸²⁾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재임용된 동독 교원에 대한 민주적 가치 체득을 위한 재교육 부족은 동서독 교육 통합에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도 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 이후 즉시 적용되어야 할 교원의 해임과 재임용 기준, 재교육 방안 등이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향후 가능한 시점에 남북한 교사 간의 교과연구회 운영, 남북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교류 등의 시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계기의 통일로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더라도 통일된 국가 내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단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한의 재교육 제도에 통일독일의 교원재교육 경험을 참고한 교원통합 사전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30일 / 채택: 4월 6일

80) 김현철, “통일한국의 초중등교원 수요예측과 공급방안,” 52~53쪽.

81) 김신희, “통일 후 북한교원 통합을 통한 남북한 마음통합: 북한교원 재임용을 중심으로,” 『윤리교육』, 제105호(2015), 300쪽.

82)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2권 1호(2012), 45~69쪽.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신동·김영운·조명숙·채해성,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탈북학교 교사들의 독일교육기행』(서울: 콘라트아데나워재단, 2014).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서울: 한올아카데미, 1997).

김정원·강구섭·김현철·조정아·안승대, 『남북한 교육통합 지원을 위한 남북한 교사 재교육방안』(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6).

김형윤·서인갑·황병식,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신세호·박성조·양성철·김영철·박재운·백성준, 『독일 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윤중혁·김정래·김창환·한만길,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서울: 인문사회연구회, 2002).

정용길,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통일교육원, 『북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06).

통일부, 『교육통합분야 관련 정책문서』(서울: 통일부, 2016).

통일부,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서울: 통일부, 2011).

한만길·강구섭·권성아·박재운·양승실·조정아,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2) 논문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2권 1호(2012), 45~69쪽.
- 김동별,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민애, “독일 통일 이후 학교교육의 통합”(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병찬, “남한과 북한의 교사 양성 과정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2008), 143~179쪽.
- 김신희, “통일 후 북한교원 통합을 통한 남북한 마음통합- 북한교원 재임용을 중심으로,” 『윤리교육』, 제105호(2015), 287~313쪽.
- 김영주,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비교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정원, “김정은 체제 북한 교육제도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임,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다』(서울: 늘품플러스, 2016).
- 김창환,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부 위임, 『교육통합분야』. 서울: 통일부(2016).
- 김현철, “통일한국의 초중등교원 수요예측과 공급방안”(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영철, “분단국가의 통일과 북한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논문집』, 제4호(1999), 57~74쪽.
- 박종철,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제16호(1993), 81~106쪽.
- 송두록,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김형직 사범대학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신철준, “북한의 중등교원 양성제도 연구”(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양선아,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 비교연구”(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카아크, 아이케이(2002). “독일 통일 전후 동독 지역의 교육제도 변화- 교사와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2002한국교육개발원 학술세미나, 2002년 1월 28일), 11~12쪽.
- Baeisa, Abdulaziz Ahmed, “Yemen unity,” 『통일문제연구』, 제16호(2000), 65~80쪽.

2. 국외 자료

1) 단행본

Hamzawy, Amr, *Between Government and opposition: The case of the Yemeni congregation for reform*(Washington DC·Moscow·Beijing·Beirut·Brussel: Carnegie Endowment, 2009).

London, Jonathan. *Education in Vietnam-Historical roots, recent trends*(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1).

Mitter, Wolfgang. *Allgemeinbildendes Schulwesen: Grund-fragen und Uberblick. Vergleich von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Ko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90).

Rust, Val Dean and Diane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Schroeder, Klaus. *Germany 20 years after reunification- Why the two parts that belong together won't grow together*(Brasilien, 2010).

2) 논문

Galtress-Horl, Karen, "Retraining language teachers," David Phillips ed. *Education in Germany since unification*(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Gotz, Klaus. Klaus Gotz, "Administrative reconstruction in the New Lander: The Federal dimension," *Paper presented to the workshop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e new German Land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pp.8~9, December(1995).

Ismail, Sharif, "Unification in Yemen: Dynamics of political integration, 1978~200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iversity of Oxford: 2009).

Upchurch, Martin, "Institutional transference and changing workplace relations in post unification East Germany: A case study of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Work, Employment & Society*, Vol.12, No.2(1998), pp.195~218.

3) 신문

“Zeit des Vergessens,” *Spiegel: Zeit des Vergessens*, Vol.40(1991), pp.110~114,
<https://www.spiegel.de/spiegel/print/d-13492552.html>.

4) 기타

<http://factsanddetails.com/southeast-asia/Vietnam/sub5-9f/entry-3457.html>(검색
일: 2020년 2월 19일).

<http://www.kmk.org/service/servicebereich-schule/landesinstitute.html>(검색일:
2020년 2월 19일).

Teacher Reappointment and Retraining Experience of the Unified Germany: Lessons for a Unified Korea

Kim, Hyunchul (Sungkyunkwan University)

Lee, Woo Yo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eacher integration and the criteria for dismissal and reappointment of teachers in Vietnam, Yemen, and Germany following each country's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lessons for teacher reappointment and retraining in a future unified Korea. Germany was the only country which experienced teacher dismissal and retraining after unification. The study examines the dismissal criteria, retraining system, methods, programs, and institutions for the teacher retraining of the unified Germany. The number of teachers expected to be dismissed, and the reappointed teachers after reunification were reviewed along with the number of new teachers in unified Korea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The immediate and systematic education in the

unified country is necessary even if the entire society undergoes radical changes with unification. The study recommends the operation of curriculum research groups and mutual exchange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between the two Koreas.

Keywords: unified Korea, teacher, reappointment, retraining